

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제안연월일 : 2026. 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HAPPY700 평창시네마의 협약기간이 만료(2026. 8. 12.)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가. 위탁사무명

-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2조, 제7조
- 추진 필요성
 - 영화관은 관리·운영의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관리사무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 및 관리 전반
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명 칭 : HAPPY700 평창시네마
- 위 치 :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89, 용평복지회관 2층
- 주요시설 : 연면적 456.42m²
[영화관 1(132.42m), 영화관 2(139.24m), 계단실(42.26m), 로비(131.48m), 창고(11.02m)]

마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 : 2026. 8. 13. ~ 2029. 8. 12.(3년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공개모집(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8조1항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민간위탁금 132,252천원(군비) ※ 2026년 당초예산 기준
 - 운영인력 지원(3명)
- 사무관리비 5,628천원(군비)
 -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(전기, 소방, 승강기) 용역
- 공공운영비 9,600천원(군비)
 - 공과금(승강기 유지) 등
- 행사운영비 20,000천원(군비)
 - 작은영화관 활성화 프로그램(봄·가을 영화제) 운영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- 작은영화관은 영화 배급 및 상영관리, 디지털 영사시스템 운영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 전문 운영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.

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야간·주말 운영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며 신속히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문화 기반 시설 운영이 용이함.

○ 경제적 효율성

- 군 직영대비 전문인력(영사기능사 등) 채용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대한 탄력성 제고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함.

○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- 상영시스템 관리 기술 및 영화 배급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정적 상영시스템 운영 및 최신영화 배급 등 기술 활용이 가능함.

○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성과평가(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19조의2)를 통해 운영실적(관람객 수, 상영횟수 등)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용이함

○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이 용이함
- 정기적인 감사 및 결산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함

○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- 평창군 관내 유일한 영화관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평창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